

# 간호학과 대외 교류 운영세칙

제정 2026. 04. 13.

**제1조(목적)** 본 운영세칙은 경동대학교 (이하 ‘본 대학교’) 간호대학 간호학과(이하 ‘학과’) 의 대외 교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·외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, 교육·연구·봉사 역량의 제고를 도모하며, 그 성과와 이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·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운영세칙은 학과의 대외 교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.

**제3조(기본 원칙)** ① 대외 교류는 본 대학교 및 학과의 발전계획에 부합하여 운영한다.  
② 국내 협력체계 구축을 우선으로 하되, 필요 시 국제 교류를 연계한다.  
③ 관련 법령 및 대학 규정을 준수하고, 참여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.  
④ 대외교류 사업은 필요에 따라 연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, 그 추진 결과 및 개선사항은 기록·보관한다.

**제4조(사업 내용)** 대외교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1. 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활동
2. 학술 교류 및 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
3. 기타 대외 교류와 관련된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과 연계되는 활동
4. 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외 협력 사항
5. 기타 필요 시 추진하는 교류 활동

**제5조(사업 주체)** 제4조에 따른 업무는 학과 내 대외교류 업무팀에서 수행한다.

**제6조(위원회 설치 및 명칭)** 학과의 대외교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 대외교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둔다.

**제7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 필요 시 부학장이 대행한다.  
② 위원은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여 학장이 위촉한다.  
③ 간사 1인을 두며, 회의 준비 및 운영 등을 담당한다.

**제8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의 임면 또는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대외 교류 관련 기본 운영 방향 설정 및 연차 운영계획과 그 이행 점검
2.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활동 추진 및 성과 점검
3. 필요 시 국제 학술교류 참여 검토

**제10조(위원회 회의)** 위원회 회의는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18조에 따른다.

**제11조(위원회 회의록)** 위원회 회의록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19조에 따른다.

**제12조(성과관리 및 질 개선)** ① 위원회는 매년 성과평가 및 지속적인 질 개선(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; CQI)을 실시하며, 목표 대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.

② 성과평가에는 프로그램 운영실적, 참여율, 만족도, 예산 집행 현황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, 개선과제별 담당자·이행기한·확인방법을 포함한 다음 연도 운영 계획에 반영하며,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관리한다.

**제13조(보고서 및 자료관리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연 1회 이상 작성·관리한다.

1. 부서별 운영계획서
2. 부서별 운영 성과 평가 결과보고서

**제14조(준용)**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56조에 따른다.

**제15조(운영세칙 개정)** 본 운영세칙의 개정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57조 제2항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본 운영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.